

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과학사박물관 규정

제정 1993. 4. 30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과학사 박물관 (이하 “농학박물관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농학박물관은 농업분야의 교육·연구·문화·민속에 관한 자료를 수집, 정리, 보존, 전시하며 교직원과 학생의 관람 및 소장자료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
제3조(관장) 농학박물관에 관장을 두며, 본 대학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.

제4조(조직) ① 농학박물관에는 자료연구부와 행정실을 둔다.

② 자료연구부에 부장을 두며, 조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.

③ 자료연구부는 자료의 조사, 연구, 간행, 연구발표회 및 전시회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
④ 행정실은 보안, 관인관수, 서무, 회계 및 자료연구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.

제5조(연구원 등) ① 농학박물관에 연구원, 특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.

③ 특별연구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외인사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하며,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④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하며,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농학박물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학장과 행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관장의

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며,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본운영계획, 예산 및 결산
2. 소장 자료의 선정, 평가 및 연구계획
3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
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⑤ 위원회의 회의는 관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운영세칙) 기타 농학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(제116호, 1993.4.30.)

이 규정은 199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